

과업지시서

사업명

2025학년도 입학식 입학키트 물품 구매

2025년 01월



목 차



I . 과업개요	1
----------------	---

II . 세부과업내용	2
-------------------	---

III . 과업수행 조건	3
---------------------	---

1. 과 업 명 : 2025학년도 입학식 입학키트 제작

2. 과업기간 : 착수일 ~ 2025. 03. 08. [토]

3. 행사 장소 : 서정대학교 공학관 콘서트홀

4. 내 용

가. 기간 : 25.03.04.(화), 25.03.08.(토) 2일

나. 장소 : 서정대학교 공학관 콘서트홀

다. 대상 : 2025학년도 신입생 대상 약 2,450명 기준

5. 과업목적

가. 신입생들에게 환영의 의미를 전달하고,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지원

나.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다. 대학의 첫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신입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

6. 과업범위

가. 입학키트 구성 및 디자인 인쇄

※ 구성품목은 세부내역 참조

나. 구성 제작 및 포장, 인건비 등 모든 비용 포함

다. 구성품의 내용이 변경될 시 본교 담당자와의 협의 필요

II

세부 과업내용

1. 주요과업 세부내용

가. 구성품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수량	내용	사진(예시)
입학키트 구성 (8개)	매쉬 필통	2,450	-규격 : 200mm*100mm -색상 : 블랙	
	보조배터리	2,450	-도킹형 보조배터리 -5,000mAh -충전 타입 : C타입 -「SJU」 로고 인쇄	
	USB	2,450	-32GB -「SJU 서정대학교」로고 인쇄	
	3색볼펜	2,450	-검정,파랑,빨강 3색볼펜 -「SJU 서정대학교」로고 인쇄	
	플래너	2,450	-약 40장 내외 -102mm*145mm -SJU방패로고 작은 사이즈 (이미지 참조)	
	에코백	2,450	-340mm*400mm -라벨(택) 로고 인쇄 -색상: Dark Blue(학교상징색)	
	투명화일	2,450	-L홀더 클리어 파일(A4) -파일 하단에 로고 인쇄 「SJU 서정대학교」	
	입학증서	2,450	-상장용지 a4 사이즈(가로형)	

나. 세부내용

- 매쉬필통 안에 3색볼펜 1개를 포함하여 제공
- 구성품(필통+3색볼펜, 보조배터리, USB, 플래너)이 에코백 안에 포장되어 제공
- 납품 전, 모든 입학키트가 지정된 구성품을 올바르게 포함하고 있는지 포장 상태를 확인되어야 함
- 모든 포장 작업은 납품 시점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완성된 에코백 형태로 납품 가능하여야 함
- 구성품의 내용은 변경될 수 없으며, 색상이나 규격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담당자와 협의 후 수정 가능함

Ⅲ

과업수행 조건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나. 입학키트의 모든 구성품은 2025년 2월 14일(수)까지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로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종 납품 기한을 2월 21일(금)까지로 한정된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에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때

2. 과업 수행기준

가. 본 용역은 제반 법규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법규에 적법하게 수

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 수행 시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각 부분마다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참여자

가. 본 과업 수행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학교 교외 프로그램 진행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과업 수행 용역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집행 지침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과업을 시행하되, 사용될 분석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재산권, 저작권

가. 재산권 · 저작권 협의

- 행사 결과물(사진, 영상물, 음악물, 행사 자료 등) 및 제작 콘텐츠(제작물)에 대한 지적 · 물적 재산권 및 제반 권리의 소유권은 모두 발주처에 있음.
- 위와 관련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과업들에 대해 운영대행사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함(저작권 동의서 및 출연계약서 작성 등)

5. 과업내용의 추가 · 변경 및 해석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다.

라. 과업내용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한다.

※ 당초 계약체결금액보다 소요비용이 감소한 경우엔 설계 변경한다.

나. 발주처는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가. 과업수행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본 용역이 완료되고 향후 활용 시 발주처의 기술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등 모든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결과물이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등 지적재산권 및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무단사용이나 침해로 인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 다.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 권리의 소유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마.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등

- 가.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과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준비 단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과업수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때
 - 발주처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 나.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다.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되, 계약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라. 그 밖에 천재지변,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시 임차시행일(설치) 이전에 계약을 해지·취소 할 수 있다.

10. 손해배상 등

-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